

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2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. 19.

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,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'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'를 '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'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·지원대상자를 피해아동과 피해여성으로 확대함(안 제50조 등).
- 나. 지역연대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을 정비함(안 제51조 및 제5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성발전기본법」,
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- (3) 입법예고 : 2008. 12. 5 ~ 12. 24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”를 “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”로 한다.

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0조(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) 아동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,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아동과 피해 여성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(이하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1조(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
2.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

제52조(구성) ①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피해자 보호·지원 담당공무원
2. 여성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
3. 여성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54조제1항, 제55조제1항·제2항, 제56조, 제57조제1항·제2항 및 제58조중 “협의회”를 각각 “지역연대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요보호 여성지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로 본다.

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요보호여성 지원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으로 본다.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<u>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</u></p> <p>제50조(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) <u>요보호여성(가정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원대책 협의 및 여성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51조(기능) <u>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요보호여성지원대책 강구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</u> 2. <u>요보호여성의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/u> 3. <u>요보호여성의 선도·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</u> <p>제52조(구성) ①<u>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<u>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<u>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</u></p> <p>제50조(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) <u>아동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,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아동과 피해여성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51조(기능) <u>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</u> 2. <u>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/u> 3. <u>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</u> <p>제52조(구성) ①<u>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<u>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
<p>1. <u>요보호여성의 선도·보호·단속업무 담당공무원</u></p> <p>2. <u>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</u></p> <p>3. <u>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	<p>1. <u>피해자 보호·지원 담당공무원</u></p> <p>2. <u>여성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</u></p> <p>3. <u>여성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
<p>제54조(회의) ①<u>협의회의</u>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4조(회의) ①<u>지역연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5조(의안의 제출)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<u>협의회</u>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위원은 <u>협의회</u>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55조(의안의제출) ① ----- ----- <u>지역연대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지역연대</u> ----- -----</p>
<p>제56조(안건의 배부) 위원장은 <u>협의회</u>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56조(안건의 배부) ----- <u>지역연대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
<p>제57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반영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58조(위원장등의 직무등) 위원장등의 직무, 의견청취, 운영세칙, 간사 등은 제31조, 제35조, 제37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와 “심의위원회”는 “협의회”로 본다.</p>	<p>제57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지역연대 ----- -----</p> <p>② --- 지역연대----- ----- -----지역연대----- -----</p> <p>제58조(위원장등의 직무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지역연대 -----</p>

관 계 법 령

□ 여성발전기본법

제22조 (여성복지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·연령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(수요)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(모자가족), 미혼모(미혼모), 장애인 여성, 가출 여성,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(노인)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5조 (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(교정)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 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여성부 『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』 구성·운영의 지침

1. 목 적

- 성폭력·가정폭력·유괴 등 아동·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 제고
-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·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

2. 구 성

- 「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」(이하 지역연대)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며,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

- 여성폭력 관련기관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, 원스톱지원센터 등)
- 아동보호관련기관(해바라기아동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)
- 의료기관(병원, 보건소, 119 등)
- 교육기관(교육청, 각급학교 등)
- 경찰·사법기관(경찰(112)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)

- 위원은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

- 상기 5개 기관유형 중, 4개 기관 유형이상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, 특히 아동보호관련기관이 있는 지역은 아동 보호관련기관을 반드시 포함할 것

※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·군·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기 5개 기관 유형 중 4개 기관 유형이상이 포함된 경우 지역연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

- 위촉위원 변동 시, 소속기관 및 단체 후임자에게 자동 계승

- 위원장은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되, 부단체장(시·도의 경우 국장급 공무원까지)에게 위임 가능
- 민·관간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은 민·관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이 가능하며, 이 경우 민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
- 간사는 시·도의 경우 「여성긴급전화 1366」 대표자 또는 시·도청의 담당과장을 지정하고, 시·군·구의 경우 시·군·구청의 담당과장으로 함

3. 기 능

- 지역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 및 실종·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함
-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
-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
- 지역 내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
- 「아동안전지킴이집」, 「아동안전지킴이」, 「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」 등 운영 지원
-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

4. 운 영

회의 운영

- 회의는 연 4회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실시하며, 위원장이 소집·주재함
-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

-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함

- 회의 개최 시 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

□ 소위원회 운영

- 각 시·도 및 시·군·구 지역연대별로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

- 소위원회 구성·운영은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로 함

- 소위원회 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 분기별 지역연대 회의운영 보고 시 보고하도록 함

□ 운영경비

- 지역연대 운영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자체예산을 편성·운영하도록 노력하며, 시·도는 관할 시·군·구 지역연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조치

5. 기 타

-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권고

※ (가칭) 「지역연대 구성·운영 조례」

유사 조례가 있는 경우,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조정 개정

-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로 채택·점검,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

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 위원명단

(2009년 1월)

연번	구분	소 속	직 위	성명	성별	소 관 업 무	연락처	비고
1	위원장	대 전 광 역 시	복지여성국장	조정례	여	복 지 여 성 국 총 괄	600-2500	공무원
2	부위원 장	여 성 긴급 전화 1366	소 장	김홍혜	여	성가정폭력,성매매 등 긴급상담	222-7042	민간인
3	위원	대 전 지 방 검 찰 청	사 건 과 장	위용수	남	위법행위수사 및 폭력피해자 등 지원	472-9009	공무원
4	“	대전지방경찰청(생활안전과)	여성청소년계장	김홍태	남	사건관련조사, 단속, 현장출동(112)	609-2048	공무원
5	“	대 전 광 역 시 교 육 청	중등교육과장	임봉수	남	학생 전입학,청소년교육 및 선도	480-7640	공무원
6	“	충 남 대 학 교 병 원	진료행정실장	이종효	남	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 (의 료 행 정)	280-7294	민간인
7	“	이정희변호사사무소 (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)	변 호 사	이정희	남	성·가정폭력피해등 권리보호 (성 폭 력 법 률 구 조)	489-2933	민간인
8	“	배재대가정법률상담소 (한국가정법률상담소)	소 장	윤형렬	남	법 률 상 담 (가정폭력 법률구조)	520-5258	민간인
9	“	대한법률구조공단대전지부	과 장	최동배	남	법 률 자 문 (가정폭력 법률구조)	472-9062	민간인
10	“	구세군대전여성의 집	원 장	도희자	여	모자일시보호(긴급피난처)	583-8875	민간인
11	“	구세군 정다운 집	원 장	이부순	여	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	584-1141	민간인
12	“	대 전 성 폭 력 상 담 소	소 장	이현숙	여	성폭력 전문상담기관	712-1368	민간인
13	“	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	소 장	신보미	여	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	636-2033	민간인
14	“	평생교육문화센터	상 담 실 장	우홍준	남	요 보호 여성 등 상 담	600-1930	공무원
	간사	대 전 광 역 시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과	과 장	엄명순	남	여성가족청소년과 총괄	600-2520	공무원

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9. 2. 5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. 19 대전광역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. 20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사회위원회(2009. 2. 5)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여성국장 조정례)

1. 제안이유

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,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”를 “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”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·지원대상자를 피해아동과 피해여성으로 확대함(안 제50조 등).
- 나. 지역연대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을 정비함(안 제51조 내지 제52조).

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권태환)

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대상 성·가정 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해 「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」의 명칭을 「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」로 개정하고 아동관련 보호기능의 추가 등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안 제50조는 아동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·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 및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「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」를 「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」로 명칭을 변경함.
- 안 제51조는 “협의회”를 “지역연대”로 하고 기능을 확대함.
- 안 제52조는 지역연대의 위원에 아동복지사업 수행자를 추가함.
- 안 제54조 내지 제58조 중 “협의회”를 “지역연대”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,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아동 및 여성의 성폭력·가정폭력·유괴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역차원의 「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」를 구성·운영토록 2008. 6. 13일에 여성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사항이나,

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유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「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」의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 및 여성 피해자보호 기능과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
이는,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

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동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IV. 질의·답변 요지 : 생략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